안산시장학금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76

제출년월일 : 2004. . .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☐ 제안이유

○ 현재 중소기업 근로자로 제한하고 있는 산업체근로자위탁장학생을 확대하고, 우수장학생 및 도울장학생의 성적 관련 자격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안산시장학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.

☐ 주요골자

가. "산업체근로자위탁" 의 정의를 중소기업에서 근로자(상시) 5인이상의 제조업체로 조정함 (안 제2조).

나. 우수장학생 및 도울장학생의 선발 요건을 "성적이 우수한자로 (출신) 학교장이 추천한 자" 로 통일적으로 규정함 (안 제4조).

다. 장학금심의위원회 위원중 "시교육장" 을 "시교육청 관리국장" 으로 변경함 (안 제6조).

☐ 개정조례안 : 별첨

☐ 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
☐ 예산수반사항 : 해당없음

☐ 사전예고결과 : 의견없음

○ 입법예고 : 2004. 9. 18 ~ 2004. 9. 28

☐ 기타 참고사항 : 해당없음

안산시장학금조례중개정조례안

안산시장학금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"산업체근로자위탁" 이라 함은 시 관내 실업계 고등학교 또는 경기도립 직업전문학교를 졸업(이수)하고 시 관내 산업체(시 관내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두고 5인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제조업체에 한한다)에 6월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중에서 선발하여 시 관내 대학(교)에 전문교육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.

제4조제1항제1호중 "수학능력평가 고득점자 또는 4년제 대학 수시입학생으로" 를 "성적이 우수하여" 로 하고, 동항제2호중 "장학생 선발일" 을 "제5조에 의한 장학금 신청일" 로 하며, 동항제3호중 "학년 전체 100분의 50 이내로" 를 "우수하여" 로 한다.

제4조제2항중 "산업체근로자위탁장학생은" 다음에 "장학금 신청일 현재 안산시에 주소를 둔 자로서" 를 삽입한다.

제6조제4항중 "시교육장" 을 "시교육청 관리국장" 으로 한다.

제11조제6호중 "중소기업에서" 를 "산업체에서" 로 하고, "중소기업으로" 를 "산업체로" 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주민자치과
입안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주민자치과장 임 철 웅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교육지원담당 김 종 인
	담 당 자 성명·전화	김 지 숙 (행정 3452)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 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1. (생 략) 2. "산업체근로자위탁"이라 함은 시 관내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시 관내 중소기업(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분류에 따른다)에 6월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중에서 선발하여 시장이 시 관내 대학(교)에 전문교육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.	제2조 (정의) ---------- 1. (현행과 같음) 2. "산업체근로자위탁"이라 함은 시 관내 실업계 고등학교 또는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를 졸업(이수)하고 시 관내 산업체(시 관내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두고 5인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제조업체에 한한다)에 6월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중에서 선발하여 시 관내 대학(교)에 전문교육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.
제4조 (장학금 지급대상) ①애향장학금은 장학금 신청일 현재 1년이상 계속하여 보호자와 함께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. 1. 우수장학생 : 시 관내 고등학교·관외 소재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재학생으로 성적우수자(신입생은 입학성적순) 및 시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(교) 신입생(고등학교 졸업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를 포함한다)으로 수학능력평가 고득점자 또는 4년제 대학 수시입학생으로 출신 학교장이 추천한 자 2. 근로장학생 : 장학생 선발일 현재 시 관내 기업체에 1년이상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(재산세 10만원이하 납부자에 한한다)의 자녀로서 학교장이 추천한 자 3. 도울장학생 : 기초생활보장대상자의 자녀 및 기타 불우학생중 학업성적이 학년 전체 100분의 50이내로 출신 학교장이 추천한 자 ②산업체근로자위탁장학생은<삽 입>출신 학교장, 상공회의소회장 등이 추천한 자로 한다.	제4조 (장학금 지급대상) ①---------- ---------- 1. 우수장학생 : ---------- ----------성적이 우수하여---------- 2. 근로장학생 : 제5조에 의한 장학금 신청일 ---------- 3. 도울장학생 : ---------- ----------우수하여 ②---------장학금 신청일 현재 안산시에 주소를 둔 자로서----------

현 행	개 정 안
제6조 (심의위원회) ① ~ ③ (생 략) ④위원은 부시장·시의회 부의장·시교육장을 당연직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 ⑤ (생 략)	제6조 (심의위원회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----------시교육청 관리국장---------- ⑤ (현행과 같음)
제11조 (지급정지)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 1. ~ 5. (생 략) 6. 산업체근로자위탁장학생의 경우 제2조 제2호에 의한 중소기업에서 퇴사한 경우 (관내 타 중소기업으로 이직한 경우는 제외한다)	제11조 (지급정지) ---------- 1. ~ 5. (현행과 같음) 6. ----------산업체에서---------- --------산업체로----------